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○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34조제6항)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